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 범 인 **대한병원협회**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 부서장

제 목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 관련 안내

1. 관련근거
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- 198호 (2015.11.17.)

나.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 - 854 (2016.2.26.)

2. 위 근거와 관련,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의 희귀질환에 대하여 '16.3.1일부터 산정특례 적용이 확대됩니다.

3.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, 국내 전문가가 적고 진단이 어려워 사전에 승인된 의료기관의 등록 담당의사가 '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'에 따라 극희귀질환을 확진한 후에 산정특례 등록을 시행합니다.

4. 이에,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진단 할 수 있는 승인 의료기관 명부와 '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'을 알려온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5. 또한 '15.12월 확대한 선천성 심장질환 중 '심실대혈관 연결불일치' 등 13개 질환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붙임 1.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의 희귀질환 진단 승인 요양기관 명단 1부

2. 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 1부

3. 일반희귀질환(심혈관) 확대목록 1부

4.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1부('16.3.1기준)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. 끝.

대한병원협회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 행 : 보험 제 2016-102 (2016.02.29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

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